

日帝下 朝鮮信託株式會社の 設立과 信託統制의 完成

김 명 수*

요 약

본고에서는 1920년대 후반 은행합동과 함께 일제하 朝鮮總督府에 의한 강제적 금융재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信託合同의 의미를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함께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1931년 朝鮮信託業令의 시행을 전후한 신탁업계의 동향과 조선총독부의 신탁통제정책을 배경으로 탄생한 朝鮮信託株式會社의 설립과정을 살펴본 뒤, 朝鮮信託 중심의 신탁합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조선토지신탁의 사례와 함께 검토하였다. 1933년 1월 개업한 조선신탁은 이후 총독부와 朝鮮銀行과 殖産銀行 兩行의 지원하에 신탁합동을 주도하여 1933년 9월부터 1934년 11월까지 群山信託, 釜山信託, 共濟信託, 朝鮮土地信託, 南朝鮮信託을 각각 합병시킴으로써 조선 유일의 신탁회사가 되었다. 이른바 信託業一元化가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일제하 신탁합동에 대한 검토는 일제하에 이루어진 각 부문에서의 합동정책의 성격, 즉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며, 은행업을 중심으로 했던 한국금융사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이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조선신탁주식회사, 한상룡, 신탁합동, 조선토지신탁주식회사

I. 緒 言

필자는 별고에서 1932년 朝鮮信託株式會社(이하 조선신탁)의 설립 이후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e-mail: fallsky@yonsei.ac.kr, Hiyoshi International House D-204-0, 2-27, Hiyoshi, Kohoku-ku, Yokohama-shi, Kanagawa 223-0061, Tel: 81-45-560-6660(내선 4240). 본 논문에 유익한 심사의견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전개된 信託合同이 1920년대 내내 진행되다가 1929년 1월의 改正銀行令 시행을 계기로 본격화된 銀行合同과 軌를 같이 하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강제적 금융재편의 대표적 사례이며, 1931년의 신탁관계법령의 정비는 그를 위한 제도적 기초의 형성임을 밝혔다.¹⁾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신탁합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아울러 그것이 일본자본주의와 그에 의한 對朝鮮 식민지정책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본고의 과제는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高承濟의 연구를 들 수 있다. 高承濟는 일제하 신탁업이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고, 신탁경영의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931년의 조선신탁업령의 시행과 더불어 한국인에 의한 신탁회사 경영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선신탁의 설립배경을 분석하여 同社의 설립이 일제의 對韓植民政策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조선귀족으로 대표되는 지주들의 부동산을 受託管理하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하여 생계기반을 안정시킴으로서 식민통치를 보다 공고히 한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치적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제하 금융사적인 흐름, 즉 경제적인 요인을 간과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²⁾

한편 그간 이루어진 일제하 신탁업에 관한 연구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³⁾ 첫째, 조선의 신탁업은 1908년 3월 藤本合資會社와 南鮮商事信託株式會社에 의해 처음 시작된 이래 1910년대 내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제1차세계대전기의 起業熱과 1918년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의 신탁업 경영을 계기로 민간에 확대되기 시작했다.

둘째, 조선의 신탁업은 1차대전기 호황을 배경으로 1920년대 초반부터 급성장했으나 대부분 자본금 50만원, 특히 10만원이하의 영세성을 특징으로 했다.

셋째, 신탁업자들은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유치하고 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그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예금과 대

1) 拙稿 金明洙 「朝鮮總督府의 金融統制政策과 그 制度的 基礎의 形成 -1931년 朝鮮信託業令의 制定을 중심으로-」 (『東方學誌』 제131집, 2005).

2)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 (一潮閣, 1970), 제10장 朝鮮信託株式會社.

3) 이와 관련된 연구사는 金明洙의 앞의 글 참조.

출면에서 은행의 영업범위를 잠식하였고, 결과적으로 은행이 1920년대 내내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한 신탁업 통제를 요구하는 원인이 되었다.

넷째, 조선총독부 또한 신탁회사를 外皮로 삼고 있던 부정금융업자들에게 대한 단속의 필요성 때문에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1931년 日本信託法の 조선내 확대 실시와 朝鮮信託業令의 제정·공포는 그 결과물이었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1931년 조선신탁업령의 제정·공포에 기설신탁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총독부의 신탁합동 움직임과 신탁합동을 주도한 조선신탁의 설립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신탁합동에는 어떤 수단이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신탁합동의 전개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일제하에 이루어진 각 부문에서의 합동정책의 성격, 즉 일본에 있어서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밝혀줄 것이며, 은행업 중심이라는 한국의 금융사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朝鮮信託業令의 施行과 朝鮮信託業界의 動向

1931년 6월 9일 조선신탁업령이 공포되고 동년 12월 1일 시행될 것이 알려지면서 기존의 신탁업자들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 신법령이 요구하는 법정최소자본금 200만원은 차치하더라도 5년의 유예기간 내에 1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 내 신탁업자들 대부분이 50만원 이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10만원 이하의 영세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신법령의 적용은 신탁업자들에 대한 정리와 향후 이루어질 엄격한 규제를 示唆하는 것이었다. 이후 조선의 신탁업은 자연스럽게 재편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에 대한 前

4) 여기서 신탁업자들이란, 신탁업이 주가 되는 신탁회사(주식, 합자, 합명)와 신탁업이 부가 되는 겸영회사(주식, 합자, 합명), 그리고 겸영은행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고에서는 겸영회사에 겸영은행을 포함시켰으나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겸영은행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겸영은행은 조선은행과 조선신식은행을 뜻하는데, 이들은 다른 신탁업자들과는 달리 각각 1918년 朝鮮銀行法과 朝鮮殖産銀行令에 의해 신탁업의 겸영을 허락받았다.

提로서 먼저 1925년 9월말의 조선총독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1920년대 중반 신탁업의 實狀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⁵⁾

1920년 '春季 財界劇變' 이래 일반사업계는 沈衰狀態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신탁사업만은 逐年 발흥하는 기이한 현상의 결과, 1919년말 현재 총자본금 5,772만원(조선은행 4천만, 식산은행 1천만)에 회사수 9사에 불과했던 조선내 신탁업은, 1920년말에는 총자본금 1억 2,240만원에 회사수 20사, 1925년 9월말에는 총자본금 1억 4,078만원에 회사수 59사로 1920년대 전반에 이미 총자본금과 신탁업자수 양면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들 회사가 영위했던 업무는 대부분 재산의 관리·처분의 수탁, 채무의 보증, 부동산의 매매·대차의 중개 등으로 金錢信託, 不動産信託, 有價證券의 信託, 金錢債權의 信託 등의 주요 신탁과목은 아직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⁶⁾

【표 1】 信託業者種類別調(1925년 9월말 현재, 단위 만원)

	신탁회사			경영회사			계		
	회사수	공칭자본	불입액	회사수	공칭자본	불입액	회사수	공칭자본	불입액
주식회사	28	1,836	482 *492	14 (12)	12,215.5 (1,215.5)	6,935.8 (2,435.8)	42	14,055 *14,051.5	7,427.8
합자회사	6	10	10	8	12	12	14	22	22
합명회사	1	1	1	2	3.5	3.5	3	4.5	4.5
계	35	1,847	503	24 (22)	12,231 (1,231)	6,951.3 (2,451.3)	59	14,078	7,454.3

(자료)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第十七卷(不二出版, 1996), 95쪽.

(비고) 1. 개인으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調査至難으로 제외함.

2. *는 자료의 오류를 수정한 수치임.

3. 경영회사란의 ()는 경영은행을 제외한 수치임.

1925년 9월말 현재 신탁업자 59사의 구성을 <표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신탁회사 35사, 경영회사 22사, 경영은행 2행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본금 구성은 同順으로 총 1,847만원, 1,231만원, 11,000만원으로 이었는데, 평균규모는 각각 약 52만 7천원, 56만원, 5,500만원이었다.

5) 이하의 서술은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第十七卷(不二出版, 1996), 94-98 쪽을 따르며, 별도로 주를 표기할 때는 『說明資料』로 약한다.

6) 『說明資料』, 95쪽.

평균규모에서 신탁회사와 경영회사가 비슷했으나 경영회사가 약간 웃도는 규모였다. 경영은행을 제외하고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각각 65만 5천원과 101만 3천원으로 그 규모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경영회사에 비해 신탁회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했음을 보여준다.

〈표 2〉에 나타난 자본금규모에서는 500만원 4사, 300만원과 200만원 각각 1사, 100만원 6사, 50만원 5사의 분포를 보였으나, 50만원 미만이 전체 59사중 67.8%인 40사에 달하여 자본의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불입자본의 경우는 25만원 미만을 불입한 회사가 전체 59사중 76.3%인 45사에 달해 그 영세성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⁷⁾

59개 신탁업자들의 설립연도를 〈부표 2〉를 통해 보면, 1908년 3월 藤本合資會社(경영회사)와 南鮮商事信託株式會社가 설립되었고, 1910년에 仁川信託合名會社가 설립되었는데 이후 1918년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이 신탁업무를 경영하기까지 신탁업자의 등장은 보이지 않는다. 이후 1920년부터 1924년까지 10사, 14사, 15사, 11사, 6사가 각각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 결과 1930년말에는 최고 80여사에 달했다.⁸⁾ 〈부표 3〉에 나타난 이들 신탁업자들의 지역적 분포에서는 전체 59사 중 44%에 달하는 26사가 경기도에 집중되었고, 충북, 황해, 강원, 함북에는 신탁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적인 편중현상을 보였다.

요컨대,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 전반기에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 집중되어 설립된 조선의 신탁업자들은, 50만원 미만의 영세성과 제한된 영업과목을 특징으로 하면서도 최고 80여 사에 달했을 정도로 활발한 영업상황을 보였다. 여기에는 신탁회사뿐만 아니라 조선은행이나 식산은행을 포함한 경영회사도 상당수 존재했다. 1925년 조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후의 조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인 신탁업자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920년대는 가히 신탁업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조선의 신탁업은 1931년 12월 조선신탁업령의 시행과 함께 조선토지신탁, 공제신탁, 군산신탁, 부산신탁,

7) 『信託關係事項參考書』(朝鮮總督府財務局, 1930), 5~6쪽에서는 50만원 미만의 신탁회사 19사중 16사, 즉 84.2%가 10만원 이하였다.

8) 伏見寛次「朝鮮信託株式會社」(『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第4号, 1961), 214쪽.

남조선신탁의 5사만이 남는 급격한 지각변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후술하듯 조선은행이나 식산은행과 같은 擔保附社債信託業者⁹⁾들을 제외한 일반 신탁업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법령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 2】 信託會社公稱資本金額調(1925년 9월말 현재)

공칭자본	신탁회사	검영회사	계	비 고
8,000만엔	—	1	1	朝鮮銀行
3,000만엔	—	1	1	朝鮮殖産銀行
500만엔	2	2	4	朝鮮勸業信託株式會社(경성) 사장 竹内作平 京城現物取引信託株式會社(경성) " 中村再造 朝鮮土地株式會社(경성) " 韓正一 不二興業株式會社(경성) " 藤井寛太郎
300만엔	1	—	1	釜山米穀證券信託株式會社(부산) " 大池忠助
200만엔	1	—	1	朝鮮信託株式會社(인천) " 吉田秀次郎
100만엔	5	1	6	東亞興業株式會社(경성) " 朴泳孝 共濟信託株式會社(경성) " 池田與三郎 京城穀物信託株式會社(경성) " 天日常次郎 東亞信託株式會社(경성) " 金源白 群山米穀信託株式會社(군산) " 三菊五郎 朝日釀造株式會社(인천) " 釘本藤次郎
50만엔	5	—	5	漢城信託株式會社(경성) " 金閔煥 中央信託株式會社(경성) " 朴宇永 平壤信託株式會社(평양) " 伊藤佐七 大邱穀物信託株式會社(대구) " 濱崎喜三郎 釜山信託株式會社(부산) " 山村正夫
50만엔미만	21	19	40	
계	35	24	59	

(자료)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第十七卷(不二出版, 1996年), 97쪽.

(비고) 설명자료에는 대정13년 9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통계들과 마찬가지로 대정14년 즉 1925년 9월말 현재의 자료라고 생각됨.

조선신탁업령의 시행일이 1931년 12월 1일로 정해지면서 신법령하에서

9) 1905년 일본에서 성립된 擔保附社債信託法이 조선에 확대 시행된 것은 1920년 11월 勅令 제533호에 의해서였다. 同法은 鐵道財團·工場財團·鑛業財團을 담보로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事業·會社의 업무를 확충,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전후 일본 재계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당초는 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의도가 컸으며, 同法에 의해 최초로 외국에서 사채를 모집한 것은 1905년 關西鐵道株式會社の 100만파운드와 北海道炭礦鐵道株式會社の 100만파운드였다. 同法의 역사적 전개에 관해서는 編輯責任 末弘嚴太郎·田中耕太郎 『法律學辭典』 (岩波書店, 1936), 1811-1833쪽에 자세하다. 아울러 조선에서는 1925년 9월말 현재 조선은행에서 4口 1,170만원의 사채모집과 관련된 신탁을 인수했을 뿐이다. 『說明資料』, 97쪽.

인가를 희망하는 회사들의 면허신청이 줄을 이었는데, 10만원이라는 빈약한 자본금 때문에 면허신청을 포기한 北鮮방면의 신탁회사들을 제외하더라도 20사 이상이 신청하였다.¹⁰⁾ 조선신탁업령 제5조에 의해 경영회사는 더 이상 신탁영업을 할 수 없었고, 신탁회사의 경우도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더라도 1931년말 현재 5년내 최소 100만원의 자본금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20사 이상이라는 숫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순수하게 신탁회사로 인정받고자 했던 회사들도 있었지만, 후술하는 신탁합동 과정에서 기설신탁회사가 신탁권리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하고 자산평가의 일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신탁회사로 면허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탁권리금을 노린 회사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조선신탁업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회사는 부산신탁, 남조선신탁, 군산신탁, 공제신탁, 조선토지신탁의 5사에 불과했다.¹¹⁾ 나머지 회사들은 <별표 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군소신탁회사는 간판을 바꾸고 대부분 일반금융회사로 전환하거나 해산하였다. 이는 난립하던 군소신탁회사들에 대한 정리가 조선신탁업령의 실시와 함께 단기간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총독부는 유력 5사에 대해 조선신탁업령 시행 이전 內免許를 내 주면서 부과했던 채무정리의 조건을 일일이 확인한 뒤 同令 시행과 함께 정식면허를 내 주었다.¹²⁾ 이때에도 첫째,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실제가액에 一錢의 차이도 있어서는 안되며, 둘째, 情實的 貸付는 차제에 일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¹³⁾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면허조건은, 1931년 12월초 당시 정무총감 金井田清德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유력한 신탁회사가 출현할 수 있으니 諒知하라는 것이었다.¹⁴⁾ 이 조

10) 『每日申報』 1931. 10. 27. <認可 信託會社 二, 三社에 不過乎>.

11) 당초에는 공제신탁이 아닌 인천의 조선신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내부사정으로 1930년 말부터 거의 휴업상태였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대신 경성에 있던 공제신탁이 포함되었다. 『每日申報』 1931. 3. 7. <群山信託 結局 合併乎>.

12) 구체적인 채무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一, 本令 施行 期日까지 회사에 관한 一切의 債務를 整理함 一, 회사 중역은 本令 施行 期日까지 其會社에 대한 負債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불가능한 경우는 本府가 타당하다 認할 負債 償還計劃을 수립할 事 『每日申報』 1931. 11. 14. <申請中の 信託會社 五社에만 內免許>.

13) 『每日申報』 1931. 12. 4. <嚴選主義에서 各信託會社 免許>.

14) “既허가회사는 현재 5개사인데, 그 회사들에게 허가를 내줄 때, 장래 유력한 회사

건은 향후 전개될 신탁업 재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미 1930년 초에 시작되었다가 1931년 6월 9일 조선신탁업령의 공포와 더불어 본격화된 韓相龍의 신탁회사 설립과 관계깊은 것이었다.¹⁵⁾ 처음부터 신탁합동을 의도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총독부가, 한상룡이 추진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았던 조선신탁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신탁합동을 달성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中央—會社主義’ 또는 ‘全鮮—信託會社主義’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¹⁶⁾

그러나 신탁회사들은 총독부의 구상과는 달리 이른바 ‘地方分散主義’를 예상하면서 신탁합동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¹⁷⁾ 이러한 입장은 조선신탁동업회 역원의 자격으로 조선내 신탁회사를 고찰하고 내놓은 조선토지신탁회사 전무 末森富良의 ‘地方色을 尊重하고 地方事情에 通하는 것이 가장 肝要하며 其 運用이 圓滑치 못한 것은 會社라도 此를 充實케 하여 分散的으로 許可하는 것이 會社를 確實케 하고 斯業界의 發展을 期함’이라는 결론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이에 조선신탁동업회는 각 지방별 합동을 통해 ‘地方分散主義’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고 있었다.

우선 북선 방면은 자본금이 모두 10만원인 청진의 北鮮信託, 함흥의 咸興信託, 원산의 元山信託, 함북 경성군의 協和信託의 4사를 합동하여 1사로 하며, 서선 방면은 자본금 50만원의 平壤信託 1사만을 평양에 두고, 역시 평양의 大同商事信託이나 진남포의 鎭南浦信託은 平壤信託에 합동시키거나 전업시킨다. 둘째, 부산에는 釜山信託과 釜山米穀證券信託을 합동하여 1사로 하되 둘 다 규모가 커 합동이 불가능할 때는 2사로 그냥 두며, 대구에는 大八信託 1사, 목포에는 全南信託 1사, 군산에는 群山信託 1사를 각각 존속시킨다. 셋째, 중앙에는 경성의 朝鮮土地信託과 共濟信託을 두고

의 설립이 있을지 모르니, 이것을 諒知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韓翼教編 『韓相龍君을語る』(靑雲文化社, 1941), 339쪽.

15) 韓相龍에 대해서는 拙稿 金明洙 「韓末日帝下 韓相龍의 企業活動 研究」(『연세경제연구』 7-2, 2000) 참조. 韓相龍이 一大신탁회사를 설립하고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929년 12월 29일 식산국장 松村松盛씨를 방문하여 신탁회사 설립에 대해 회견한 것이 발단이 었다. 韓翼教編, 위의 책, 319쪽.

16) 『每日申報』 1931. 8. 12, <信託會社免許 分散主義가 必要>.

17) 『每日申報』 1931. 8. 5, <信託會社 大合同 實現이 容易치 안타>.

가능하면 인천의 朝鮮信託을 가입시켜 3사로 한다.¹⁸⁾

그러나 이러한 일반의 예상이나 신탁업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총독부는 신법령에 의한 면허과정에서 朝鮮土地信託을 중심으로 기설회사를 모두 합병할 계획이었다. 일본의 경우 1923년 1월 1일 신탁업법 시행과 함께 514사 이상 존재하던 기존의 신탁회사 중 겨우 28여 사만 인가된 사실을 감안할 때, '조선은 1사로 충분하며 또 자격이 없으면 전연 인가치 않아도 좋다'는 입장이었다.¹⁹⁾ 즉, 총독부에서는 '中央—會社主義'의 입장에서 기설신탁회사에 대한 면허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계획은 조신토 지신탁과 기타 유력신탁회사들의 합동기운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려웠다.²⁰⁾ 따라서 전술한 5사에 대한 면허는, 총독부가 추진하던 '中央—會社主義'가 신탁업자들의 '地方分散主義'라는 반대에 부딪쳐 형성된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Ⅲ. 信託合同政策의 變化와 朝鮮信託 株式會社の 設立

총독부가 희망하고 계획하던 '中央—會社主義'가 유력신탁회사의 반대로 그 실현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²¹⁾ 일각에서는 결국 조신탁령에 의한 지방적 합동을 통해 부산, 군산, 평양, 부산, 경성 각 1社가 면허될 것으로 예상했다.²²⁾ '中央—會社主義'의 대한 차선책으로, 우선 새로운 법령에 의한 면허과정에서 지방적인 합동을 추구하고, 이후 전국적 합동을 계획했던 것이다. 이는 상당수의 지방은행이 일단 지방적 합동을 거친 후 서울의 대은행에 합병된 1920년대 은행합동의 경험과 상통하는 것이었다.²³⁾ 전술

18) 『每日申報』 1931. 8. 12, <信託會社免許 分散主義가 必要>.

19) 麻島昭一 『日本信託業發展史』(有斐閣, 1969), 제3장: 『每日申報』 1931. 10. 8, <信託會社認可는 全鮮—社主義?>. 일본 신탁업법의 사적 전개에 관해서는 麻島昭一 『日本信託業立法史の研究』(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0), 220에 상세하다.

20) 『每日申報』 1931. 7. 14, <信託은 全鮮的 合同>; 1931. 8. 5, <信託會社 大合同 實現이 容易치 안타>.

21) 『每日申報』 1931. 6. 23, <信託令 實施에 따라 當業者 合同이 必要>; 1931. 7. 14, <信託은 全鮮的 合同>; 1931. 8. 5, <信託會社 大合同 實現이 容易치 안타>.

22) 『每日申報』 1931. 9. 2 <信託會社 大合同은 事實 不可能>.

했던 5사에 대한 면허도 이러한 맥락에서 과도기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한편, 면허과정에서 朝鮮土地信託을 중심으로 기설신탁회사들을 합병시켜 1사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유력회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총독부의 관심은 한상룡이 계획하고 있던 조선신탁으로 옮겨갔다. 기설회사들의 합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中央—會社主義'가 一大회사의 신설을 통한 강제합병으로 그 축이 옮겨졌던 것이다.

한상룡이 신탁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1931년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1919년 齋藤實이 조선총독에 부임한 이후, 즉 신탁회사의 설립분이 시작될 무렵 한상룡은 一大신탁회사의 설립을 정무총감 水野鍊太郎에게 건의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었다.²⁴⁾ 당시 한상룡의 이러한 움직임은 大戦景氣에 호응하여 '所謂 事業界에 在한 信託事業會社의 設立이 漸多코자 하는 傾向이 顯著'한 상황과 관계가 있었다.²⁵⁾ 그러나 1920년 3월 발생한 반동공황은 회사 설립 논의 자체를 무기한 연기시켰고, 이후 계속된 공황으로 신탁회사 설립이 다시 재론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상룡이 신탁회사를 설립하고자 나선 데는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齋藤實이 1929년 8월 다시 조선총독에 부임한 사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다.

첫째, 1929년 1월 1일 실시된 改正銀行令으로 은행업 정비의 법률적 기초가 마련되자, 총독부에서 '益益 危險한 方向으로 向하는 者도 不少하므로 財務當局은 目下 各 信託會社의 內容에 關하여 ——히 嚴密한 調査를 行한 후 '신탁령 및 신탁업령의 발포를 急速히 하리라'는 방침을 피력하고 있었다.²⁶⁾ 금융업 정비의 최종과제로서 총독부의 신탁업 정리 방침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전문가의 안목을 가지고 있던 한상룡은, 영세성을 특징으로 난립하던 조선의 신탁업이 정리된다면 그 방향은 大信託主義가 될 것이고, 새롭게 제정될 조선신탁업령은 안정된 영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둘째, '조선에서 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경지(부동산)'에 대한

23) 尹錫範外 『韓國近代金融史研究』(世經社, 1996), 230쪽.

24) 韓相龍 「朝鮮信託株式會社の設立に關して」(『朝鮮實業俱樂部』10-11, 1932).

25) 『毎日申報』1919. 11. 29, 〈信託會社 續起〉.

26) 『毎日申報』1928. 12. 6, 〈銀行令 實施後 信託業 調査〉.

보호 방책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었다. 즉, '소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유치 불완전한 관리 처분방법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地主 본인은 물론 국가사회에裨益하는 바 크다는 社會政策的 견지에서도 또한 강력한 신탁회사의 출현이 요구'27)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0년대 내내 지속된 계급 대립을 완화시키고 한국인 지주와 중간계급을 보호 유지해야 한다는 당시의 비등한 여론을 지적할 수 있는데,28) 이러한 사정은 발기인들이 만든 조선신탁 설립취의서의 '農業의 經營과 社會事情의 現情에 비추어 不動産信託의 開拓에 努力하는 것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었다'29)는 내용에서도 독해할 수 있다.

셋째,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 상당히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부족한 예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신탁회사들이 계속 금전신탁 위주의 경영을 계속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우려하며 금전 이외의 재산, 특히 부동산의 신탁경영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많았다.30) 특히 일본에서는 과중하다고 비판받고 있던 登錄稅率을 파격적으로 경감시켰을 뿐만 아니라31) 信託이 종료할 때 일괄해서 부과하도록 하였고,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信託에 대해서는 아예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개업 3년간의 營業稅를 면제해 주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면서까지 부동산신탁을 조장하고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32)

넷째, 漢城銀行을 통해 재계 중진으로 성장한 한상룡이 1928년 경영 실

27) 中村萬太郎編『朝鮮信託株式會社十年史』(朝鮮信託株式會社, 1943), 55-56쪽.

28) 熊本利平「農村의 重大問題—投機의 폐풍을 矯正하여 中産階級을 유지하라」(『朝鮮農會報』 1924년 3월호) : 李晟煥「朝鮮 農民運動의 情勢」(『朝鮮日報』 1928.1.1), 金容燮「朝鮮信託의 農場經營과 地主制 變動」(『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96), 333쪽 각주14에서 재인용.

29) 中村萬太郎編, 앞의 책, 58쪽.

30) 藤戶計太『朝鮮金融經濟研究叢書』(大東學會, 1932.2), 575쪽.

31) 麻島昭一은 일본 부동산신탁의 특수사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본고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하여 소개한다. 첫째, 농지의 신탁이 大藏當局의 행정지도에 의해 억제되고 있었다. 이는 소작쟁의 발생으로 인해 위탁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부동산신탁에 부과되는 登錄稅가 무겁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의 발전을 저해했다. 셋째, 부동산신탁은 受託者에게 있어서 低採算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受託擴大에 나설 의욕이 없었다. 合同運用이 가능한 금전신탁과 비교할 때 관리비용이 아주 높았기 때문이다. 麻島昭一「戰前期信託會社の不動産信託—住友・秋田・近江信託の事例による實證的研究—」(『社會科學年報』 第 29号), 16-17쪽.

32) 藤戶計太, 위의 책, 603쪽.

패의 책임을 지고 同行의 頭取를 사임하면서 一生一大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모면에서 기존 회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一大신탁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에 취임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자본금 600만원의 대은행인 漢城銀行의 頭取를 지낸 명실상부한 조선재계의 실력자였던 그에게 남겨진 불과 자본금 50만원의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었던 것이다.³³⁾

이러한 사정들이 맞물리면서 한상룡의 신탁회사 설립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지만, 아직 조선에 신탁관계법령이 발포되어 있지 않았고, 자본이 薄弱한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탓에 신탁회사 설립에 대해 정무총감 兒玉秀雄을 필두로 한 時機尙早論이 제기되었다.³⁴⁾ 조선신탁업령이 조선에 발포되고 시행될 때까지 회사 설립 자체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실제로 韓相龍이 조선신탁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조선신탁업령 발포 직후인 1931년 8월 4일에 성사된 총독 宇垣一成과의 첫 면담 이후였다.³⁵⁾ 이 면담에서 宇垣一成과 한상룡 사이에는 신탁회사 설립과 신탁업에 대한 정리를 연계시킨다는 의견일치를 본 듯하다. 이러한 판단은, 전술한 조선신탁업령이 제정·공포된 후 기설회사들의 '地方分散主義'와 총독부의 '中央一會社主義'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과 총독부가 당초 의도했던 조선토지신탁 중심의 신탁합동이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韓相龍 또한 자신이 추진하던 신탁회사 설립을 난관에 빠져 있던 총독부의 신탁업 정리 방침과 연계시킴으로써 실현시키려 했다. 즉, 절묘한 타이밍에 一大신탁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중심으로 기설회사를 합병시키자는 제안을 총독부에 제안함으로써 宇垣一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³⁶⁾ 물론 여기에는 전총독 齋藤實, 藏相인 井上準之

33) 光化門生「韓相龍과 同友俱樂部, 그들의 正體는 무엇?」(『東光』 20, 1931년 4월호), 73-74쪽; 金明洙, 앞의 글, 200-202쪽.

34) 이러한 時機尙早論은 朝鮮信託株式會社가 설립된 후 사장에 취임한 谷多喜麿의 언급에서도 보여진다. 그는 '내지와 비교하여 다소 문화의 정도가 다른 조선에서 신탁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어쩌면 時機尙早라는 느낌'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조선에서는 경제의 발달, 사회의 복잡화가 내지와 같지 않고, 따라서 신탁사업의 필요가 그다지 促迫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谷多喜麿「朝鮮信託會社の設立に就いて」(『朝鮮』 214호, 1933년 3월호), 85-88쪽.

35) 韓翼教編, 앞의 책, 332쪽.

36)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일본내 후원자이자 상담자였던 水町袈裟六가 보낸 1931년 9

助, 그리고 전일본은행부총재 水町袞六³⁷⁾ 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한상룡 중심의 신탁회사 설립에 총독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귀착되었던 것이다.³⁸⁾

총독부의 지원을 약속받은 韓相龍은 1931년 10월 말 육군대연습 참석차 동경에 가는 宇垣一成과 동행했는데, 그의 동경 출장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었다. 1920년대 내내 지속된 재계의 불황으로 '朝鮮內로만은 株式消化가 到底히 不可能'했기 때문에 '東京 財界 巨頭에게 諒解 連勸'하여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³⁹⁾ 실제로 그는 資源局 장관 宇佐美勝夫를 위시하여 拓務省, 東拓, 會計檢査院 관계자들, 일본 귀족들, 銀行·信託 등의 금융업 관계자들, 그리고 三井·三菱·安田·住友 등의 재계 유력자들을 만나 협조를 호소했는데, 그가 접촉한 사람들의 숫자는 당시 총독부 재무국장 林繁藏도 놀랄 정도였다.⁴⁰⁾

둘째, 부동산신탁의 낮은 채산성을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한 총독부의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자들의 협조를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미 총독부와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상황이었지만,⁴¹⁾ 보조금 지급

월 18일자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既設회사를 합병하여, 一大회사로 만드는 것이 근본문제입니다만, 이것은 귀하의 말이 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총독과 좀 더 熟談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韓翼教編, 앞의 책, 333쪽.

37) 水町袞六은 佐賀藩 출신으로 帝國大學 법학과와 동대학원 연구과정을 졸업하였다. 1891년 大藏省에서 시작하여 1907년 大藏次官에 올랐다. 1908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 주재하면서 大使館付 및 海外駐節財務官을 역임하였다. 1911년 사직한 후 일본은행 부총재에 임명되어 1919년 3월까지 재직하였고, 1913년 2월에 잠시 橫濱正金銀行의 두취를 겸임하였다. 이후 會計檢査院長(1924.3-1929.11), 樞密顧問官(1929.11-1935.7), 法政大學長을 지냈다. 秦郁彦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東京大學出版會, 1981), 227쪽.

38) 「五信託會社の合併に就て」(『朝鮮』 제235호, 조선총독부, 1934), 174쪽. 이러한 사실은 조선신탁 설립이 한창 구체화되고 있던 1932년 7월 4일 한상룡이 총독관저로 宇垣一成을 방문했을 때, 宇垣一成이 했던 이야기에서도 확인된다. "既設會社 쪽도 합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귀찮아질 테지만, 독립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기가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다" 韓翼教編, 앞의 책, 352쪽.

39) 『毎日申報』 1931. 9. 19. 〈一般이 期待하는 大信託會社 實現乎 -東京財力閥을 中心으로 進行〉.

40) 宇垣一成文書研究 『宇垣一成關係文書』((株)芙蓉書房出版, 1995), 176-177쪽 ; 韓翼教編, 앞의 책, 334-338쪽.

41) 한상룡이 東京 로비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정무총감 金井田清德을 보고차 방문했을

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大藏省의 심사와 閣議의 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초 보조금 지급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대장성이 뒤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는데 여기에 한상룡의 로비 활동이 얼마나 주요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총독부에서 '상속관계나 부동산의 트러블이 非常하게 많고' 또 '중간착취계급인 솜푼의 폐해 또한 작지 않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부동산신탁회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총독 宇垣一成이 간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의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장성의 입장을 강하게 반박한 이후 보조금 지급이 성사된 것은 확실하다.⁴²⁾

일본에서의 자금모집과 신설회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자, 한상룡과 총독부의 회사만들기는 구체화되었다. 우선 정무총감은 관저로 有賀光豐(殖銀 두취), 松原純一(鮮銀 이사), 中野太三郎(東拓 이사), 朴榮喆(商銀 두취), 韓相龍(朝鮮生命 사장)을 불러 조선신탁 설립에 관한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⁴³⁾ 아울러 신문지상에 보조금 10만원이 신설회사에 교부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여 그 설립을 공론화하였다.⁴⁴⁾

그러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반대는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을 비롯한 은행측과 기설신탁업자들이었다.⁴⁵⁾ 加藤敬三郎(조선은행)과 有賀光豐(식산은행)은, 지금은 부동산신탁을 명분으로 설립되지만 결국 영업부진에 빠져 금전신탁을 겸업하게 될 것인데, 그럴 경우 은행측과 예금 및 대출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그들의 인식은 '内地로부터 大信託會社가 進出하게 되는 경우에는 大脅威'가 되나 1931년

때 今井田의 언급에서 이미 구체적인 액수와 그 산출근거, 그리고 보조연한까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보조금은 10만원으로 計上되어 있지만, 내년의 영업개시는 어찌면 7월경쯤이 될 것이다. 10만원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초 1천만원의 1/4 불입에 대한 4分の 보조 예정으로, 年限은 5개년으로 충분할 것이다." 韓翼教編, 앞의 책, 339쪽.

42) 水田直昌·土屋喬雄編述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友邦協會朝鮮史料編纂會, 1962), 95쪽.

43) 『毎日申報』 1932. 1. 17, <金井田總監 信託補助事情說明 -民間 金融首腦者에게->.

44) 『東亞日報』 1932. 1. 16, <韓氏計劃의 信託에 補助 決定된 일이다>.

45) 金融制度調査準備委員會와 金融制度調査會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이재과장 兒島高信의 반대도 있었으나, 그의 반대는 조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선신탁이 설립되더라도 그 운용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설립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韓翼教編, 앞의 책, 350쪽.

12월 '現在 信託會社の 實情으로는 별로 염려할 것이 없다'⁴⁶⁾는 어느 은행 당국자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정최저자본금의 5배나 되는 1천만원의 大信託會社 출현은 보통은행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되었던 것이다.⁴⁷⁾

한편 기설신탁업자들은 조선신탁의 설립 자체보다는 조선신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불공평성을 지적하고, 그것이 곧 '기득권의 압박'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新會社の 補助 阻止' 또는 '既設會社에도 10萬圓의 補助'를 요구하며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구체적인 운동에 착수하였고, 직접 동경에 가서 관계당국에 진정하기도 하였다.⁴⁸⁾ 이러한 기설신탁회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총독부 재무국장 林繁藏은, '補助金을 交付하기로 決定한 理由가 發達の 遲延한 不動産信託을 造成할 目的에 있는 以上 今에 更히 反對가 있다하여 此를 變更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며 既設會社の 補助는 其必要를 認定치 않는다'며 일축하였다.⁴⁹⁾

발기인에는 '朝鮮內에 在한 既設信託責任者 地方有力者 大地主' 중에서 43명이 선임되었다. 발기인들은 1932년 11월 8일 조선은행에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창립취의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정관을 원안대로 결정하고, 창립위원에 加藤敬三郎, 有賀光豊, 高山長幸, 関大植, 朴榮喆, 荒井初太郎, 韓相龍의 7인을 선출하였다. 또한 발기인회에서는 창립총회일(12월 15일)과 주식모집의 구체적 요향도 결정하였는데, 자본금 1천만원에 총 20만주(주당 50원)를 발행하여 18만주는 발기인과 찬성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2만주는 공모하기로 하였다.⁵⁰⁾

46) 『毎日申報』 1931. 12. 3. 〈信託預金과 銀行側의 態度〉.

47) 京城組合銀行 『朝鮮ニ於ケル信託法規制定ニ關スル答申書』 (1930), 2쪽 ; 『東亞日報』 1932. 1. 14. 〈一千萬圓의 大信託會社計劃〉.

48) 韓翼教編, 앞의 책, 350쪽.

49) 『毎日申報』 1932. 3. 11. 〈信託會社の 補助는 絶對不變〉 ; 1932. 10. 16. 〈信託會社 設立 民間도 積極的 態度〉.

50) 『東亞日報』 1932. 11. 10. 〈朝鮮信託 發起의 內容〉.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계속된 응모에서 약 1만주의 초과응모가 있었다. 이 초과 응모분을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는 東京 現物團으로 하여금 신청주 약 2만주 중에서 9천 1백주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1만여 주에 대한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東京 現物團의 朝信株 인수는 그간 東京 現物團의 對朝鮮 투자가 殖産債券의 인수에 한정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조선에 대한 최초의 주식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毎日申報』 1932. 11. 25. 〈朝鮮信託 超過株 處分〉.

【표 3】 조선신탁주의 지역별 인수현황(1933년 5월 31일 현재)

지역	주주구성		소유주구성		1인당주수 (주)	
	주주수(명)	비율(%)	주수(주)	비율(명)		
朝鮮 540명 (86%) 186,040주 (93%)	황해	24	3.8	630	0.3	26.3
	함북	19	3.0	1,100	0.6	57.9
	함남	28	4.5	2,400	1.2	85.7
	평북	10	1.6	860	0.4	86.0
	평남	24	3.8	960	0.5	40.0
	충북	6	1.0	220	0.1	36.7
	충남	11	1.8	3,490	1.7	317.3
	전북	33	5.3	1,560	0.8	47.3
	전남	24	3.8	1,320	0.7	55.0
	경성	177	28.3	162,429	81.2	917.7(72.2)
	경북	52	8.3	4,090	2.0	78.7
	경남	40	6.4	3,010	1.5	75.3
	경기	77	12.3	3,301	1.7	42.9
강원	15	2.4	670	0.3	44.7	
日本 85명 (14%) 13,960주 (7%)	神奈川	1	0.2	100	0.1	100
	三重	1	0.2	200	0.1	200
	山口	1	0.2	50	0.0	50
	兵庫	1	0.2	100	0.1	100
	東京	67	10.7	12,570	6.3	187.6
	大阪	12	1.9	810	0.4	67.5
	埼玉	1	0.2	110	0.1	110.0
	岡山	1	0.2	20	0.0	20
합 계	625	100	200,000	100	—	

(자료) 조선신탁주식회사 제1기 영업보고서 <주주명부>.

(비고) 경성의 1인당주수 중 ()는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을 제외한 평균임.

실제 주식의 인수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주주수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각각 86%(540명)과 14%(85명)를 점하였고, 주식수로는 각각 93%(186,040주)와 7%(13,960주)를 점하여 대부분 조선내 자본이 조선신탁의 주식인수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대주주는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으로 전체 20만주 중 74.9%인 149,800주를 인수했다.⁵¹⁾ 지

51) 당초에는 朝鮮銀行, 殖産銀行, 東拓이 각각 5만주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조선신탁 창립 직전에 拓務省의 반대로 할당되었던 5만주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다. 拓務省이 주식인수를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1932년 東拓은 換差損의 발생으로 상반기 결산에서 無配當이 결정되었고, 이러한 영업성적의 轉落은 여름까지 계속된 株價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 拓務省을 중심으로 減資를 통한 東拓 整理 問題가 大藏省에 제출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東拓은 조선신탁의 주식인수에까지 손을 댈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正友會 출신이었던 東拓 총재 高山長幸과 拓務政務 次官 堤康次郎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조선신탁에의 참여를 봉쇄함으로써 총리대신 犬養毅의 추천에 의해 총재에 취임한 高山長幸의 정치적 입지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河合和男外 『國策會

역별로는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이 위치한 경성이 주주수와 주식수에서 각각 28.3%와 81.2%를 차지하여 주식인수가 주로 경성의 은행과 실업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만, 동경을 비롯한 일본에서도 동경을 중심으로 10.7%인 67명이 6.3%인 12,570주를 인수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장에는, 식은 이사 矢鍋永三郎과 선은 이사 松原純一이 경합을 벌였으나 결국 제3의 인물인 조선화재 사장 谷多喜磨로 결정되었다.⁵²⁾ 발기인 총대로서 창립을 주도하여 사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한상룡이 취체역회장으로 물러났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 한상룡뿐만 아니라 사장에 낙점된 谷多喜磨까지도 당혹스럽게 한 의외의 결정이었다. 1931년 말에 이미 총독 宇垣一成, 三井信託 사장이면서 일본신탁협회장 米山梅吉, 그리고 大藏大臣 井上準之助 등이 함께 한 회합에서 사장에는 한상룡이 취임하고 전무에 일본의 신탁전문가를 용빙하거나 총독부 혹은 민간에서 채용하여 실무를 맡기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⁵³⁾ 그러나 신탁합동을 통해 신탁업을 정비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입장에서 합동의 조력자였던 은행측과 합동의 대상이었던 신탁업자들의 반대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⁵⁴⁾ 한상룡을 희생시키더라도 신탁합동을 완성시키겠다는 총독부의 결정이었다.

취체역 및 감사역에는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으로부터 각각 4명씩 추천되

『社東拓の研究』(不二出版, 2000), 80-81·317-318頁; 피터 두우스(金容德역) 『日本近代史』(지식산업사, 1983), 180·191쪽; 『東亞日報』1932. 12. 27, 〈朝鮮信託株의 東拓 引受를 反對〉; 『每日申報』1932. 12. 6, 〈朝鮮信託에 對한 東拓投資는 一時的〉.

52) 谷多喜磨는 1884년 생으로 1909년 동경대학 獨法科를 졸업하고, 그해 高文에 합격하여 京城裁判所 판사에 취임 渡鮮하였다. 1910년 12월에 행정관이 되어 충청남도 재무부장이 되었고, 황해도, 충청남도 재무부장, 총독부 수산과장을 거쳐 1919년 강원도 제1부장(후에 내무부장으로 개칭)으로 累進하였다. 1923년 2월 경성부윤이 되고 1925년 6월 평북지사, 다시 1929년 경남지사가 되었다. 1930년 12월 退官과 동시에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사장에 추천된 인물이다. 阿部黨 『朝鮮功勞者銘鑑』(民衆時論社, 1935), 65쪽.

53) 총독 宇垣一成이 주위의 반대를 이유로 취체역 회장에 취임할 것을 권유하자, 한상룡은 이를 조선인에 대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동안 東奔西走하여 성과를 눈앞에 둔 지금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에 상당한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다. 韓翼教編, 앞의 책, 355-356쪽.

54) 漢城銀行 경영 실패를 이유로 직접 사업을 담입하는 자리에 韓相龍을 앉힌다는 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東亞日報』1932. 11. 10, 〈社長, 取締役會長 併置의 制度로〉.

었는데, 色部貢(경성), 朴榮喆(경성), 馬越恭平(동경), 張稷相(大邱)은 加藤敬三郎(선은)이 추천하였고, 閔大植(경성), 金漢奎(경성), 金季洙(경성), 渡邊彌幸(동경)은 有賀光豐(식은)이 추천한 인물들이었다.⁵⁵⁾ 이는 대대분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적 지배가 가능했던 두 은행이 人事까지 장악함으로써 인적인 부문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또한 향후 전개될 신탁합동이 두 은행의 절대적 영향력하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12월 16일의 창립총회와 1933년 1월 7일의 개업은 조선신탁의 완성과 동시에 신탁합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IV. 信託合同의 展開와 信託統制의 完成

신탁합동을 염두에 둔 조선신탁의 설립이 가시화되자 1932년 10월 31일 재무국장 林繁藏은 신법령하에 면허를 받은 5개사의 대표들을 총독부로 불러 年內 출범하게 될 조선신탁 설립에 '既設會社도 可及的 合同參加를 極力 希望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조선신탁의 설립과 기설회사에 대한 정리를 연계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기설회사 대표들은 '合同參加에는 何等 異議가 없으나 買收方法과 吸收合併의 중심점'이 문제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요구하였다. 각 사에 대한 '營業權 評價'에 따라 합병의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⁶⁾

한편 조선신탁업령 시행 이후 일반의 신용이 증가한 결과 5개사의 금전 신탁 수탁고가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설 신탁회사들이 朝信과의 합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또 다 하나의 이유였다. 5개사가 조선신탁업령에 의해 개업한 1931년 12월 1일 이후, 개업

55) 『東亞日報』 1932. 12. 18. 〈重役 決定 裡面 事情〉.

56) 『每日申報』 1932. 11. 2. 〈林財務局長과 既設信託代表 會見〉. 그러나 기설회사들 간에도 각기 입장이 달랐다. 합병시 주식교부를 희망하는 회사도 있고, 현금교부를 희망하는 회사도 있고, 양자 모두의 교부를 희망하는 회사도 있었다. 이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는 각 회사의 사정과 협상력에 따라 달랐다. 『每日申報』 1932. 11. 29. 〈朝鮮信託과 既設會社의 關係〉.

당시 590만 8,758원이었던 5개사의 총신탁예금은, 그 이후 漸增하여 1932년 1월말에는 632만 4,274원이었으며 2월말에는 662만 2,721원에 달했는데, 이는 개업 당시와 비교할 경우 71만 3,963원의 증가를 보인 것이었다. 늘어난 신탁예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은행 및 금융조합의 세력권에 침입하여 조선금융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사정을 두고 한 말이었다.⁵⁷⁾

【표 4】 조선내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성적(단위:원)

社名	1933年 5月末	1932年 11月對比增	1932年 11月の 同年5月對比增
조선신탁	1,782,255	1,782,255	-
부산신탁	2,929,684	344,778	166,363
군산신탁	2,656,119	201,978	253,541
토지신탁	1,806,177	272,839	246,861
남조선신탁	1,115,556	540,165	174,180
공제신탁	1,242,986	244,311	163,823
합계1	11,532,777	3,386,326	1,004,768
합계2	9,750,522	1,604,071	1,004,768

(자료) 『朝鮮信託の將來と今後の金融動向』(朝鮮銀行京城總裁席調査課, 1933), 9-10쪽.
(비고) 합계2는 조선신탁분을 제외한 것임.

금전신탁의 증가현상은 1932년 후반부터 1933년 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위의 <표 4>의 합계2가 이를 보여주는데, 1931년 11월은 동년 5월에 비해 100만 4,768원의 증가를 보였고 1933년 5월은 1932년 11월에 비해 160만 4,071원의 증가를 보여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개사의 영업이 조선신탁의 출현과 상관없이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933년 전반기에는, 5개사가 총독부의 신탁합동 정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하거나 資産評價 내지 營業面評價에서 강경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⁵⁸⁾

57) 1932년 3월말에는 증가폭이 1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은행예금이 감소경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신탁예금의 점증현상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회사별 구체적인 증가내역은 조선토지신탁 30.3만원, 공제신탁 13만원, 부산신탁 27.7만원, 남조선신탁 5만원이었으며, 군산신탁은 5만원의 감소를 보였다. 군산신탁의 감소는 取引所 설립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었다. 『每日申報』 1932. 3. 31, <信託會社活動과 銀行에 脅威 不渺>.

58) 『每日申報』 1933. 2. 25, <朝鮮信託과 既設信託의 合同>.

이후 1934년까지 전개된 조선에 있어서 신탁회사들의 합병과정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신탁과 기설 5개사 양자의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총독부가 총지휘를 맡고 국책은행인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의 수뇌부가 알선을 담당한 강제적 금융재편의 전형적인 형태였다.⁵⁹⁾ 이하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면서 조선내 신탁합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조선신탁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과 조선토지신탁주식회사(이하 토지신탁)의 합병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조선 내 신탁합동의 특징을 해명하고자 한다.

조선은행 총재의 裁定案을 따라 최초로 합병대상이 된 것은 토지신탁이었다.⁶⁰⁾ 토지신탁을 첫 합병대상으로 한 것은, 우선 토지신탁의 사장 荒井初太郎이 기설 5개사로 구성된 조선신탁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어 업계의 중심인물이었고, 둘째 자산규모와 영업성적면에서 ‘大體 鮮內에 一社の 標準으로 볼 수 있는’ 토지신탁과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신탁합동 전체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⁶¹⁾ 5개사에 대한 면허과정에서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군산신탁이나 부산신탁 등을 합병시키려고 했던 사실로부터도 신탁업 재편에서 차지하는 토지신탁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토지신탁은 1919년 2월 三好和三郎, 笠原鈴吉, 篠崎半助, 吉田秀次郎, 末森富良 등에 의해 설립된 자본금 100만원(불입 25만원)의 朝鮮土地經營株式會社가 1930년 7월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⁶³⁾ 1924년 12월 자본금 100만원(불입 25만원)의 大正土地建物株式會社를 합병하면서 자본금을 총 1,307,700원(불입 523,080원)으로 증자한 조선토지경영은,⁶⁴⁾ 1928년

59) 『每日申報』 1933. 3. 14. 〈朝鮮信託과 既設信託의 合同〉; 1933. 4. 6. 〈內地 不動產信託 微微 不振의 狀態〉.

60) 朝鮮信託과 조선은행쪽에서 신탁합동과 관련된 조사와 합동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거론되고 있었다. 一. 朝鮮信託及 既設信託側에서 案을 作成할 것, 一. 당초부터 鮮銀裁定案을 중심으로 進할 것, 一. 기설신탁과 2, 3社 동시에 合同談으로 進할 것, 一. 既設信 各別個로 進할 것 등이 그것이었다. 『每日申報』 1933. 6. 14. 〈信託의 合同方法 目下 慎重研究中〉.

61) 『每日申報』 1933. 6. 17. 〈信託合同問題 具體的 交涉 進捗〉.

62) 『每日申報』 1931. 10. 8. 〈信託會社認可는 全鮮一社主義?〉.

63)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1年版), 225쪽; 위의 책, 1931年版, 20쪽.

64) 中村資良, 앞의 책, 1925年版, 325쪽. 大正土地建物株式會社는 1920년 3월 자본금 100만원(불입 25만원)으로 임대업, 토목건축업과 그 부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釘本藤次郎(취체역사장), 赤荻與三郎(전무취체역), 北野善造(상무취체역), 關繁太郎(취체역) 등이 그 역원이었다. 中村資良, 앞의 책, 1921年版, 227

에 정관을 변경하여 신탁업을 영업목적에 삼입하여 내용상 신탁회사로 전환하였으며,⁶⁵⁾ 1930년 7월에는 상호까지 朝鮮土地信託株式會社로 변경하고 신탁관련 영업과목을 보다 강화하여 신탁업에 대한 영업방침을 더욱 강화하였다.⁶⁶⁾

〈표 5〉와 〈표 6〉를 통해 1932년 12월, 즉 조선신탁과의 합병논의가 시작되던 직전 토지신탁의 영업상황을 알 수 있다. 신탁회사는 信託法에⁶⁷⁾ 의해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엄격히 분리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⁶⁸⁾ 대차대조표 또한 별도로 분리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두 계정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표 5〉의 고유계정을 보면, 자금은 주로 불입자본금(27.0%) 외에 차입금(65.0%)으로 조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차입은 주로 조선은행으로부터 이루어진 듯 하다.⁶⁹⁾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고유계정 자산의 85.2%가 소유부동산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부동산의 매입에 사용되었을 알 수 있다. 신탁영업이 시작되기전에는 토지·가옥·창고의 임대 및 매매가 주된 업무였음을 감안한다면, 주로 차입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쪽.

- 65) 이는 영업목적 변경 전후인 1927년과 1929년의 영업목적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1927년까지는 1.土地 家屋 倉庫의 貸付及賣買, 2.保險代理業, 3.不動産의 管理 賣買 仲介 鑑定及調査, 擔保貸付, 擔保附債務의 保證, 4.土地 및 建物の 經營에 附帶하는 業務였던 것이, 1929년에는 1.不動産의 賣買及貸借 調査 鑑定 管理 仲介 不動産擔保附及不動産擔保附債務의 保證, 2.一般信託業, 3.各種代理業, 4.前各項에 附帶하는 一切의 業務로 변경되었다. 中村資良, 앞의 책, 1927年版, 337쪽; 中村資良, 위의 책, 1929年版, 22쪽.
- 66) 中村資良, 위의 책, 1931年版, 20쪽; 中村資良, 위의 책, 1933年版, 19쪽.
- 67) 日本의 信託法은 1922년 12월 28일 勅令 제512호에 의해 19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것이 조선에 연장 적용된 것은, 1931년 9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114호에 의해서였고, 그 시행은 1931년 12월 1일부터였다. 朝鮮信託協會編 『朝鮮信託法規』(朝鮮信託協會, 1932), 10쪽의 信託法附則.
- 68) 信託會社의 貸借對照表는 固有勘定(계정)과 信託勘定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資産과 負債로 구별되어 있다. 이를 固有財産과 信託財産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受託者로서 신탁을 인수했을 경우 새롭게 인수된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면, 그와 구별하여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고유재산이라 한다. 營業信託(商事信託)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그 고유재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 큰 弊害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히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細矢祐治 『信託會社問題研究』(文雅堂, 1926), 70쪽.
- 69) 주요 차입선이 조선은행일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토지신탁소유부동산의 매각으로 대조선은행 채무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每日申報』 1934. 3. 31 기사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지나 창고를 건설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직접 매매에 응함으로써 매매차익을 노리는 경영방식이 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鶴岡, 清水園, 昭和園 등에 주택지를 건설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착실한 경영으로 일반의 신용을 쌓았다'는 기록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⁷⁰⁾

【표 5】 토지신탁의 영업상황(고유계정, 1932년 12월)

자 산			부 채		
항 목	금액 (원)	비율 (%)	항 목	금액 (원)	비율 (%)
(拂込未濟資本金)	(784,620)	--	(자본금) 불입자본금	(1,307,700) 523,080	27.0
국채	7,472	0.4	법정준비금	45,900	2.4
소유부동산	1,647,766	85.2	별도준비금	23,550	1.2
부동산저당대부금	25,919	1.3	직원신원보증적립금	7,827	0.4
예금	153,294	7.9	假受金	3,805	0.2
우편저금	1,075	0.1	미불배당금	2,250	0.1
立替金	14,216	0.7	대리업무수탁금	4,850	0.3
職員身元保證代用證券	4,791	0.2	차입금	1,258,268	65.0
預り數金見返	6,069	0.3	차입유가증권	7,472	0.4
支拂數金	168	0.0	預り數金	24,609	1.3
영업용토지건물집기	64,989	3.4	당기이익금	32,917	1.7
현금	8,716	0.5			
합계	(2,719,100) 1,934,480*	100	합계	(2,719,100) 1,934,480*	100

(자료)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93年版), 19·20쪽.

(비고) *의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 차이가 경미(자산은 +5원, 부채는 -48원)하여 수정한 합계를 이용하여 비율을 계산함.

한편, 신탁계정은 다음의 <표 6>에서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데, 신탁영업 가운데에서도 금전신탁이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전신탁에 의해 마련된 자금은 주로 부동산담보대부(59.5%), 예금(22.8%), 주식(7.7%), 국채 및 기타유가증권대부(5.8%)로 운영되었다. 이는 금전신탁, 금전채권의 신탁, 토지 및 그 定著物의 신탁이 각각 94.3%, 1.1%, 4.5%였던 1930년 12월과 비교할 때, 자금형성에 있어서 금전신탁에 대

70) 『最近 經濟界와 朝鮮土地信託株式會社』 (『朝鮮公論』 20-4, 통권 229호, 1932. 4).

한 의존도가 보다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⁷¹⁾ 또한 1930년 12월 부동산담보대부와 예금의 비율이 각각 71.6%와 14.3%였던 상황과 비교할 때, 1932년 12월에는 부동산담보대부를 줄이고 예금을 늘이는 형태로 그 투자행태가 변화했으며, 1930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식투자도 7.7%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주로 금전신탁에 의해 마련된 신탁재산이 총 65.4%의 대부금과 예금 그리고 주식에 투자되어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토지신탁의 영업상황(신탁계정, 1932년 12월)

자산			부채		
항목	금액 (원)	비율 (%)	항목	금액 (원)	비율 (%)
주식	118,479	7.7	금전신탁	1,533,338	100.0
국채기타유가증권담보대부금	88,459	5.8	土地 및 그 定著物의 信託	170	0.0
부동산담보대부금	912,928	59.5			
광업권담보대부금	2,000	0.1			
예금	349,868	22.8			
부동산	56,783	3.7			
立替金	8	0.0			
현금	4,981	0.3			
합계	1,533,508*	100.0	합계	1,533,508	100.0

(자료)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93年版), 19·20쪽.

(비고) *의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 차이가 경미(자산만 -2원)하여 수정한 합계를 이용하여 비율을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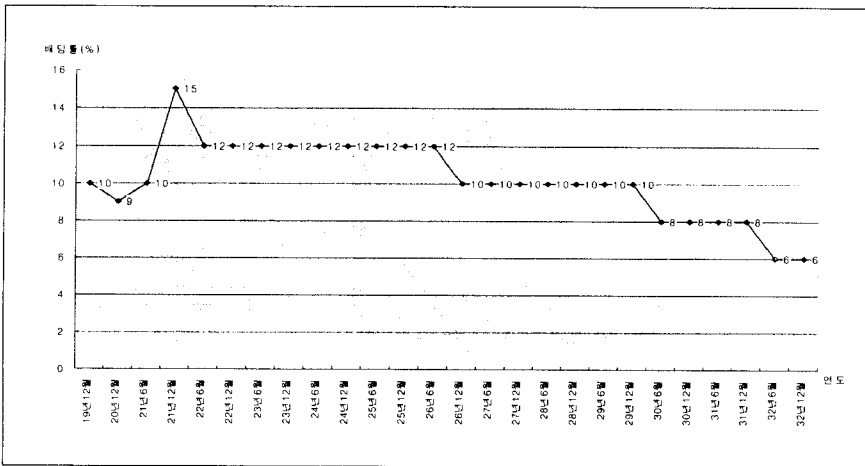
창립 이후 경영변동에 대한 이미지는 <그림 1>의 배당률 추이를 통해 그려볼 수 있는데, 1926년 6월까지 12%를 1929년 12월까지 10%를 꾸준히 유지하여 장기불황기인 1920년대에 배당률의 고공행진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배당률의 하방경직적 성격은 은행 및 금융조합의 예금이자율이 1920년대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상황에서는 예금이 금전신탁으로 옮겨가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1930년대초까지 계속되어 전술했듯이 조선신탁과 기철 5개사의 신탁예금 증가로 연결되었다.⁷²⁾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 1931년 12월까지 8%를 그 이후에는 6%를 기록하

71) 이렇게 금전신탁이 늘어난 데에는 '1932년 1월에는 京城의 某실업가가 50만원을 50년간 금전신탁으로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의 신용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주 70)과 같음.

72) 참고로 1929년 5월 현재 우편저금의 이자율은 5.48%였다. 『每日申報』 1929. 5. 16, <銀行과 金組의 利下로 信託預金 增加>.

여 개업이후 최저수준을 보여 1926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당률의 변동은 토지신탁의 경영변동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률이 12%에서 10%로 떨어진 후 1928년 신탁영업을 시작하여 경영악화에 대처하였고, 다시 8%로 하락한 뒤에는 1930년 7월 상호마저 토지신탁으로 변경하면서 신탁영업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토지신탁은 악화되는 영업상황을 신탁업, 그중에서도 특히 금전신탁에 치중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28년 신탁업을 개시한 이래 만 4년만인 1932년 2월말에 신탁재산이 114만원에 달하였고, 7·8월 경에는 2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합병 논의가 본격화된 1933년 12월 말 현재에는 금전신탁만으로 206만여원에 달하였다.⁷³⁾ 조선신탁과의 합병이 구체화된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다.

【그림 1】 조선토지신탁주식회사의 배당률 추이



자료 : 中村資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각연도판

그러나 조선신탁에 의한 토지신탁의 합병은 처음부터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토지신탁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합병의 代價이 예금이 아닌 주식이어도 무방하며 사원을 그대로 인수하고 증역 1명을 조선신탁에 입사시킨다는 등의 사안들은 차라리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고, 따라서 조선신탁에 의해 어렵지 않게 수용될 수 있었다. 보다 중요한 문제

73) 『每日申報』 1934. 1. 7, 〈土地信託 金錢信託〉.

는 합병대상이 되는 토지신탁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있었다. 이 문제는 다른 기설신탁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신탁업에 대한 認可權利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설회사들은 認可權利만해도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 조선신탁이 적당한 평가로 합병에 응하기만 하면 합병을 不辭할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총독부나 조선신탁측에서는 認可權利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⁷⁴⁾ 이렇듯 양자의 입장차는 컸다.

조선신탁과 토지신탁의 합병논의에 있어서는 認可權利金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표 5>와 <표 6>에서 보았듯이, 부동산경영을 위주로 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신탁회사들과 달리 土地와 家屋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⁷⁵⁾ 조선신탁은 토지신탁의 부동산을 167, 8만원 정도로 평가한데 반해 토지신탁에서는 최소 210만원 정도라고 판단하여 약 40만원의 차이가 있었고, 부동산을 제외한 信託部의 繼利 기타에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兩社 평가액의 차이는 약 50만원이라는 大差였다. 조선신탁이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액을 제시한 반면 토지신탁은 시가대로 평가액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토지신탁이 부동산 평가를 興信所나 東京土地建物 같은 공정한 입장의 제3자에게 의뢰할 것을 提議했지만 조선신탁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⁷⁶⁾ 조선신탁의 첫 합병대상이었던 토지신탁이 군산신탁, 부산신탁, 공제신탁에 이어 네 번째로 합병된 데에는 이 문제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였다. 이후 兩社間의 합병교섭은 1934년 1월까지 공식적인 논의없이 중단되었다.

조선신탁이 토지신탁에 다시 합병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1934년 1월 말이었다.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에서 토지신탁의 소유부동산을 자사의 평가액에 가까운 180만원 정도로 평가했기 때문에, 조선신탁은 자신들의 평가가 '變更할 餘地없는 公正한 것이라는 確信'을 가지고 있었다. 토지신탁 또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총독부 당국의 信託政策에는 贊同하는 바이나 無理한 評價에는 應從할 수 없고 만약 이 문제로 인하여 결렬되는 한이

74) 『每日申報』 1933. 4. 29. <既設信託 合同은 權利金이 問題>; 1933. 5. 3. <信託의 大合同은 權利金이 問題>.

75) 『每日申報』 1933. 6. 27. <土地信託의 朝鮮信託에 吸收合併>.

76) 『每日申報』 1934. 1. 16. <評價의 大差로 土地信託買收 不進>.

있더라도 이는 無可奈何라 하였다.⁷⁷⁾ 이렇듯 서로 강경한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합병논의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조선신탁은 토지신탁과의 합병을 뒤로 미루고 먼저 南朝鮮信託과의 합병에 착수했다. 그러나 南朝鮮信託과도 자산평가의 대차로 벽에 부딪쳤고, 결국 조선신탁에서는 당분간 신탁합동의 중지를 선언했다.⁷⁸⁾ 총독부와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의 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가액에 있어서 조선신탁의 그것과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던 총독부와 조선은행·식산은행이 양자간 합병을 조정하게 될 경우 그 내용은 토지신탁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토지신탁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토지신탁에서 자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직접 시가대로 처분하기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즉,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동산 평가가 타당했음을 증명하고, 총독부의 大方針으로 그 실현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던 신탁합동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1934년 4월 초순부터 매각을 개시하여 4월 한달 동안 약 10만원의 商談을 성립시키고 약 10만원의 상담을 진행시켜 합계 약 20만원의 부동산 처분을 예상하였고,⁷⁹⁾ 5월말까지 총 35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⁸⁰⁾ 帳簿價格과 賣却價格의 차이가 상당하여 조선신탁과의 합병과 상관없이 매각에 '直進'할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⁸¹⁾

한편, 토지신탁의 부동산 매각에 깔려있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선은행에 대한 債務를 줄여가고자 했음이 그것이다. 조선은행이 총독부의 신탁정책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對조선은행 부채의 감소는 對朝鮮信託 협상력을 높일 수 있었다.⁸²⁾ 여기에 합병이 再燃된 7월에는 저금리가 원인이 된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토

77) 『每日申報』 1934. 1. 24, 〈土地信託 不動産 問題〉; 1934. 1. 28, 〈土地信託 買收價格은 180만원 程度〉; 1934. 1. 31, 〈土地信託代表 朝鮮信託 訪問〉; 1934. 2. 1, 〈土地信託의 買收交渉 價格問題로 停滯〉.

78) 『每日申報』 1934. 2. 22, 〈信託合同 當分間 中止〉.

79) 『每日申報』 1934. 3. 31, 〈土地信託 不動産 處分〉.

80) 『每日申報』 1934. 5. 27, 〈土地信託은 不改意向〉; 1934. 6. 2, 〈土地信託不動産 賣却 處分 好調〉.

81) 『每日申報』 1934. 6. 17, 〈土地信託 不動産 分讓〉.

82) 『每日申報』 1934. 3. 31 〈土地信託 不動産 處分〉; 1934. 7. 1, 〈朝鮮信託과 土地信託의 合同工作 再燃〉.

토지신탁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⁸³⁾

부동산의 직접 매각이라는 토지신탁의 전략에 대해 조선신탁과 총독부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먼저 조선신탁에 의한 대응으로 토지신탁株의 買集이라는 '側面 攻撃'이었다. 합동촉진의 일환으로 이른바 적대적 인수합병에 착수한 셈인데, 토지신탁의 중역들을 회유하여 1934년 4월 중순에 이미 총 7천주 이상을 매집하였다. 당시 토지신탁의 총주수가 26,154주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절반이상인 1만 3천 내지 4천주 정도를 買收하여 토지신탁의 실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이었다. 3월 초순에 약 16원 50, 60전이던 土地信託株의 時勢가 4월 중순에 18원으로 昂騰한 것은 조선신탁의 多量買集에 의한 결과였다.⁸⁴⁾

두 번째 대응은 총독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1934년 6월 28일에 있었던 조선신탁의 정기총회에서 토지신탁과의 재협상 방침이 결정되자, 총독부에서 7월 13일 臨時監査를 이용하여 토지신탁을 본격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⁸⁵⁾ 더 이상 신탁합동을 미룰 수 없었던 총독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再燃된 합병교섭을 반드시 성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조선은행 총재 加藤敬三郎과 식산은행 두취 有賀光豊이 兩社의 합병을 적극 중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7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조선은행 총재실에서 加藤敬三郎과 有賀光豊의 임석하에 조선신탁 이사 色部貢과 토지신탁 사장 荒井初太郎 사이에 합병교섭 중단 이후 제1회 회견이 이루어졌다. 토지신탁이 협상테이블에 앉게 된 데에는 臨時監査를 동원한 총독부의 압박이 주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평가에 대한 양사의 기존입장이 확인되었을 뿐이었다.⁸⁶⁾ 7월 16일에는 加藤敬三郎, 有賀光豊, 조선신탁 사장 谷多喜磨, 토지신탁 사장 荒井初太郎, 총독부 재무국장 林繁藏, 총독부 이재과장 西崎鶴司가 조선은행에서 회합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착수하여 양자의 차이를 7, 8만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⁸⁷⁾ 이러한 차이의 감소는 조선신탁의 '대국적 견지의 양보'로 가능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打算의인 계산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첫째, 토지신탁의 신

83) 『每日申報』 1934. 7. 14. 〈朝鮮信託對土地信託의 合同工作 再開〉.

84) 『每日申報』 1934. 4. 18. 〈合同의 一策으로 土地信託株式 買集〉 : 『東亞日報』 1934. 4. 18. 〈土地信託株 買入으로 合同工作 進行?〉.

85) 『東亞日報』 1934. 7. 15. 〈土地信託臨時監査〉.

86) 『每日申報』 1934. 7. 14. 〈朝鮮信託對土地信託의 合同工作 再開〉.

87) 『每日申報』 1934. 7. 17. 〈土地信託買收 最後的 交渉〉.

탁예금 배당률이 다른 이자율과 비교할 때 고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률이 인하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점, 둘째, 토지신탁의 부동산 처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가 지속되어 토지신탁의 소유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상당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이다.⁸⁸⁾ 이러한 상황이 실현될 경우 조선신탁의 양보는 손해가 아니었다. 7월 19일 식은 두취 有賀光燾을 통해 토지신탁측에 最後案을 제시하고 이를 위주로 토지신탁과의 합병 알선을 의뢰한 것은 이러한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⁸⁹⁾

有賀光燾을 통해 조선신탁의 최후안을 전달받고 그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토지신탁에서는 20일 오전 중역회를 열어 의견조율에 들어갔으나, 前期로부터 이월된 부동산 처분이익의 토지신탁 귀착문제, 토지신탁 중역에 대한 퇴직급여금 문제, 老締料 문제 등에 대해 조선신탁과 아직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贊否 양파로 나뉘어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合併에 찬성하는 중역 중에는 시간을 지연시킬수록 토지신탁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어 의사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⁹⁰⁾

토지신탁의 중역회 결과를 보고받은 有賀光燾은 兩社의 최후교섭이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판단하고 20일 오후에 최후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有賀光燾에 의해 제시된 최후조정안은 기본조건과 부대조건으로 나뉘어 제시되었는데, 종래 兩社에서 주장해 온 包括買收形式을 받아들이고 株式買收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기본조건으로는 첫째, 매수 가격은 불입자본금과 동액인 52만 3천 87원으로 하며, 둘째, 諸積立金 및 이월금 10만 9천 2백 2원은 토지신탁의 처분에 일임하기로 하였고, 셋째, 今期 利益金은 토지신탁의 收得으로 간주하나 계산의 복잡을 피하기 위해 該益을 5만 5천원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대조건은 토지신탁의 현직 사원을 전부 인계하며 토지신탁의 중역 1명을 조선신탁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이었다.⁹¹⁾

88) 『每日申報』 1934. 7. 20. 〈朝鮮信託側 讓步로 急速 解決〉.

89) 『每日申報』 1934. 7. 21. 〈信託合同工作 成否의 分岐點〉.

90) 『每日申報』 1934. 7. 21. 〈再考慮를 求커나 買收交涉 拒絕?〉.

91) 株式買收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산에 의하면 토지신탁주주의 이익은, 현재 株

이러한 최후조정안에 대해 兩社는 더 이상 각자의 입장을 내세울 수 없었다. 합병 조정이 실패할 경우 그로 인해 떠안을 부담이 兩社 모두에게 컸기 때문이다. 조선신탁과 토지신탁은 21일 긴급중의회를 개최하고 有賀光豊의 최후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8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8일 假契約에 조인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1933년 이후 1년이 넘게 계속되었던 조선신탁과 토지신탁의 합병은 '朝鮮內에 在한 信託事業 統制라는 國策'의 실현에 가장 커다란 장애를 넘기는 순간이었다. 토지신탁과의 합병에 있어 最大難題였던 토지신탁소유부동산은 일단 조선신탁에서 부동산신탁의 형태로 넘겨받고, 토지신탁이 해산한 뒤에는 토지신탁의 위임을 받아 조선신탁에서 賣却하기로 했다.⁹²⁾

토지신탁과의 합병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합병의 과정과 내용은, 피합병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기설신탁회사와의 합병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부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신탁을 명분으로 했지만 其實 조선내 신탁통제를 사명으로 설립된 조선신탁은, 1933년 1월 개업이래 줄곧 총독부와 조선은행·식산은행의 지원을 받아 1933년 9월 群山信託, 동년 10월에 釜山信託, 동년 12월에 共濟信託, 1934년 9월에 朝鮮土地信託, 1934년 11월에 南朝鮮信託을 각각 합병시킴으로써 조선내 유일한 신탁회사로 남게 되었다. 이른바 '信託業의 一元化'가 성립된 것이었다.⁹³⁾

價가 18원 3, 40전임으로 현재까지의 불입액 20원과의 차액 1원 6, 70전과 적립금 및 이익금에서 해산비용과 퇴직수당을 제한 諸當額을 승한 것으로 되었다. 『每日申報』 1934. 7. 22, <朝鮮信託의 土地信託買收 合同工作 遂 完成>.

92) 『每日申報』 1934. 7. 29, <土地信託 不動産 引繼 形式>.

93) 臺灣의 신탁업에 관한 麻島昭一의 연구를 검토하면,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臺灣의 신탁업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선의 신탁업과 유사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1936년 臺灣銀行에 의해 信託業法必要論이 제기되고 유력신탁회사를 신설하여 신탁업을 통일시킨다는 구상이 있었다. 이때 신설회사는 부동산신탁을 위주로 한다거나 총독부로부터의 보조금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조선신탁을 모방하고자 했다. ② 1944년 일본의 신탁법·신탁업법이 확대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신탁회사들은 모두 합병·소멸되고 3사만이 잔존하였다. ③ 同年 8월 8일 자본금 1,000만원의 臺灣信託(株)가 신설되었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大東信託, 臺灣興業信託, 屏東信託의 3사가 합류하는 형태로 신설되었다. ④ 신설된 臺灣信託(株)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臺灣銀行(8만주), 臺灣商工銀行(1만주), 彰化銀行(1만주), 華南銀行(9천주)이 합계 10만 9천주를 인수하여 총주수의 54.5%를 취득하였고, 최대주주인 臺灣銀行이 지배하게 되었다. 麻島昭一 「戰前期臺灣信託業의 考察」, 『社會科學年報』 第34号, 專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 2000.3) : _____ 「臺灣における主要信託會社の 考察」, 『專修經營學論集』 第70号, 專修大學經營學會, 2000.3).

V. 結 語

1920년대의 만성불황과 1930년의 세계대공황으로 노정된 세계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배경으로 일본은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급속하게 이행하였다. 연속적인 공황으로 부실해진 각종 회사들은 시장에서 탈퇴하거나 상호합병을 거듭함으로써 악화된 경영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른바 資本의 集中(centralization of capital)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금융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각종 회사의 도산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1920년대 후반 일제에 의한 조선내 은행들에 대한 합동정책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나타났다. 일제가 1931년 6월에 朝鮮信託業을 제정 공포하고 신탁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나선 데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조선 신탁업에 대한 정비와 통제를 목표로 제정·공포된 조선신탁업령이 1931년 12월 1일 시행되면서 신법령에 의거하여 면허를 교부받은 회사는 조선토지신탁, 공제신탁, 군산신탁, 부산신탁, 남조선신탁의 5개사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회사들은 일반금융업으로 轉業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세한 규모의 회사들은 해산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조선신탁업령의 시행은 군소신탁회사들을 일거에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신법령에 의한 면허과정에서 조선토지신탁을 중심으로 기설신탁회사들을 합병시키고자 했으나 기설신탁회사들의 반대로 좌절하고 말았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총독부에서 관심을 보인 것은 조선 재계의 거물 한상룡이 추진하고 있던 조선신탁였다. 조선신탁은 조선 내 자본을 중심으로 三井, 三菱, 住友, 安田 등의 일본 내 자본을 유치하고, 거기에 총독부의 보조금을 받아 설립하고자 했던 자본금 1천만원의 민간회사였다. 그러나 1931년에 총독으로 부임한 宇垣一成은 '국책은행'인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으로 하여금 조선신탁 주식 20만주의 대부분인 약 15만주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조선신탁에 민간회사가 아닌 半官半民의 성격을 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립을 주도하던 한상룡은 주위의 반대에 부딪쳐 사장이 아닌 회장에 취임함으로써 경영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1933년 1월 개업한 조선신탁은 이후 총독부·조선은행·식산은행의 지

원을 받으면서 신탁합동을 주도하여 1933년 9월 群山信託, 동년 10월에 釜山信託, 동년 12월에 共濟信託, 1934년 9월에 朝鮮土地信託, 1934년 11월에 南朝鮮信託을 각각 합병시킴으로써 조선내 유일한 신탁회사로 남게 되었다. 이른바 '信託業의 一元化'의 실현이었다.

본고에서는 토지신탁의 합병만을 살펴보았으나 다른 신탁회사와의 합병에서도 대개 유사한 과정과 내용을 보였다. 합병과정에서는 주로 현금인수의 방법이 사용되고 여기에 기존의 주주들에게 새롭게 조선신탁의 주식을 대체해 주는 주식인수의 방법이 보완되었다. 합병된 기설회사들은 대부분 해당지역에서 조선신탁의 지점이 되었으며, 기설회사의 사원들 또한 이들 지점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또한 합병과 동시에 기설회사의 대표가 조선신탁의 중역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합병과정의 갈등을 드러내듯,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조선신탁과 기설 5개사간의 합병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설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또한 기설회사들은 신탁업 면허로 신탁권리금이 발생했으며 약 10만원 가량의 가치를 갖는다고 하여 자산평가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토지신탁의 경우는 다량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되었다.

자산평가의 大差로 합병이 부진했던 경우도 있었으나, 신탁합동은 國策에 順應한다는 대전제하에 기설회사 대표와 총독부 당국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자 정해진 수순에 불과했다. 말하자면 조선신탁과 기설회사 양자간의 뉘트는 합병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양자간의 합병은 주로 조선은행·식산은행의 알선과 조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합병이 여의치 않을 때는 토지신탁의 경우처럼 주식을 買集함으로써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그것도 난관에 봉착할 때는 총독부에서 臨時監査 압력을 통해 합병을 강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총독부에 의한 강제적 금융재편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신탁은 이후 해방될 때까지 조선내 유일한 신탁회사로 존재했으며, 전시기에 국채 및 유가증권의 소화라는 식민지 금융기관에 부과된 사명을 다하였다.⁹⁴⁾ 이는 신탁합동을 통한 신탁통제가 결과적으로 戰費調達이나

軍需産業擴充을 위한 國채·주식의 발행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해방후 조선신탁은 朝鮮信託銀行(1946.10)이나 韓國信託銀行(1950.4)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은행업에도 진출하였으며, 1954년 10월에는 商工銀行과 합병하여 韓國興業銀行이 되었다. 韓國興業銀行은 다시 1960년 1월 韓一銀行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 이후 몇 번의 합병을 거쳐 오늘날의 우리은행(WOORI BANK)에까지 연결되었다. 따라서 조선신탁에 대한 연구는 비단 일제하 금융업에 대한 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후 한국 금융업 연구의 前史로서도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 참고문헌 ◆

(출판연도순)

『東亞日報』 『每日申報』

中村資良 (1921·1923·1925·1927·1929·1931·1933·1935),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社.

細矢祐治 (1926), 『信託會社問題研究』, 文雅堂.

京城組合銀行 (1930), 『朝鮮ニ於ケル信託法規制定ニ關スル答申書』.

朝鮮總督府財務局 (1930), 『信託關係事項參考書』.

光化門生 (1931), 「韓相龍과 同友俱樂部, 그들의 正體는 무엇?」 『東光』, 20.

朝鮮信託協會編 (1932), 『朝鮮信託法規』, 朝鮮信託協會.

藤戶計太 (1932), 『朝鮮金融經濟研究叢書』, 大東學會.

「最近 經濟界와 朝鮮土地信託株式會社」 (1932) 『朝鮮公論』, 20-4, 통권 229호.

韓相龍 (1932), 「朝鮮信託株式會社の設立に關する件」 『朝鮮實業俱樂部』, 10-11.

『朝鮮信託의 將來と今後の金融動向』 (朝鮮銀行京城總裁席調査課, 1933).

朝鮮信託株式會社 第1期 營業報告書 (1933).

谷多喜磨 (1933), 「朝鮮信託會社の設立に就いて」 『朝鮮』, 214호.

「五信託會社の合併に就て」 (『朝鮮』, 제235호, 1934).

94) 木村健二 「朝鮮의 金融統制와 朝鮮金融團」 (伊牟田敏充編著 『戰時體制下의 金融構造』, 日本評論社, 1991), 제3장.

- 阿部薰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 編輯責任 末弘巖太郎・田中耕太郎 (1936), 『法律學辭典』, 岩波書店.
- 韓翼教編 (1941), 『韓相龍君を語る』, 青雲文化社.
- 中村萬太郎編 (1943), 『朝鮮信託株式會社十年史』, 朝鮮信託株式會社.
- 伏見寬次 (1961), 『朝鮮信託株式會社』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第4号.
- 水田直昌・土屋喬雄編述 (1962), 『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友邦協會朝鮮史料編纂會.
- 麻島昭一 (1969), 『日本信託業發展史』, 제3장, 有斐閣.
- 高承濟 (1970), 『韓國金融史研究』, 일조각, 제10장 朝鮮信託株式會社.
- 麻島昭一 (1980), 『日本信託業立法史の研究』,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秦郁彦 (1981),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 피터 두우스(金容德譯) (1983), 『日本近代史』, 지식산업사.
- 木村健二 (1991), 『朝鮮の金融統制と朝鮮金融團』, 伊牟田敏充編著 『戰時體制下
の金融構造』, 日本評論社.
- 宇垣一成文書研究 (1995), 『宇垣一成關係文書』, (株)芙蓉書房出版.
- 麻島昭一 (1995), 『戰前期信託會社の不動産信託-住友・秋田・近江信託の事例に
よる實證的研究-』 『社會科學年報』, 第 29号.
- 金容變 (1996), 『朝鮮信託의 農場經營과 地主制 變動』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一潮閣.
- 尹錫範外 (1996), 『韓國近代金融史研究』, 世經社.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1996), 第十七卷, 不二出版.
- 麻島昭一 (2000), 『臺灣における主要信託會社の考察』 『專修經營學論集』, 第70
号, 專修大學經營學會.
- 麻島昭一 (2000), 『戰前期臺灣信託業の考察』 『社會科學年報』 第34号, 專修大學
社會科學研究所.
- 河合和男外 (2000), 『國策會社東拓の研究』, 不二出版.
- 金明洙 (2000), 『韓末日帝下 韓相龍의 企業活動 研究』 『연세경제연구』, 7-2.
- 金明洙 (2005), 『朝鮮總督府의 金融統制政策과 그 制度的 基礎의 形成 -1931
년 朝鮮信託業令의 制定을 중심으로-』 『東方學誌』, 제131집.

【부표 1】 信託會社拂込資本金額調(1925년 9월말 현재)

불입자본금	신탁회사	검영회사	계
5,000만엔	—	—	1
1,500만엔	—	—	1
500만엔	—	1	1
240만엔	—	1	1
125만엔	2	—	2
75만엔	1	—	1
50만엔	2	—	2
27만엔	—	1	1
25만엔	3	1	4
25만엔 미만	27	18	45
계	35	24	59

(자료)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第十七卷(不二出版, 1996), 97쪽.

【부표 2】 設立年度別信託業務取扱會社

年別	신탁회사	검영회사	계	연말현재	비고
1908	1	1	2	2	
1909	—	—	—	2	
1910	1	—	1	3	
1911~1917	—	—	—	3	
1918	—	2	2	5	조선은행과 식산은행
1919	—	1	1	6	
1920	8	2	10	16	
1921	8	6	14	30	
1922	8	7	15	45	
1923	6	5	11	56	
1924	3	3	6	62	
해산	1	5	6		1924.9~1925.8 사이
신설	1	2	3	차이 59	1925.9까지
계	35	24	59		

(자료)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第十七卷(不二出版, 1996), 96쪽.

【부표 3】 信託業者分布의 狀況(1925년 9월말 현재, 단위 원)

도별	신탁회사			경영회사			계	자본	
	주식	합자	합명	주식	합자	합명		공칭자본	불입자본
경기	11	3	1	5	4	2	26	132,108,000	71,810,500
충북	—	—	—	—	—	—	—	—	—
충남	3	—	—	1	—	—	4	510,000	135,000
전북	2	1	—	—	—	—	3	1,122,000	547,000
전남	1	—	—	1	—	—	2	450,000	227,500
경북	2	2	—	4	1	—	9	1,515,000	425,000
경남	4	—	—	2	1	—	7	2,845,000	1,045,000
황해	—	—	—	—	1	—	1	20,000	20,000
평남	3	—	—	—	1	—	4	710,000	108,000 *208,000
평북	1	—	—	1	—	—	2	400,000	100,000
강원	—	—	—	—	—	—	—	—	—
함남	1	—	—	—	—	—	1	100,000	25,000
함북	—	—	—	—	—	—	—	—	—
계	28	6	1	14	8	2	59	140,780,000	74,543,000

(자료) 『朝鮮總督府帝國議會說明資料』 第十七卷 (不二出版, 1996), 96쪽.

【부표 4】 既設信託會社 合併 當時의 資産規模

구분 \ 회사명	群山 信託	釜山 信託	共濟 信託	朝鮮土地 信託	南朝鮮 信託
합병성립	1933.9	1933.10	1933.12	1934.9	1934.11
자산규모(圓)	843,607	507,581	338,366	660,317	412,552
소유유가증권	107,255	106,574	104,874	144,291	108,238
국채	61,985	103,074	62,169	84,192	9,988
사채	34,020	—	75	—	—
주식	11,250	3,500	42,629	60,099	98,250
대부금	646,898	47,456	96,350	7,956	208,263
유가증권담보대	85,497	8,271	—	—	88,848
동산담보대	1,146	—	—	—	8,338
부동산담보대	560,254	31,920	95,528	7,956	111,076
신용대	—	7,265	822	—	—
현금및예금	25,435	290,725	33,447	478,182	49,486
영업용토지건물집기	8,407	18,395	1,590	3,675	16,727
입체금	18,713	21,235	101,655	21,212	1,416
소유부동산	36,899	23,195	300	—	24,457
가불금	—	—	147	—	—
미수입금	—	—	—	75	3,962
기타	—	—	—	4,924	—
총매수가격*	975,000	626,000	326,500	687,289	300,000
사원인수	전부인수	전부인수	전부인수	전부인수	전부인수
취체역 취임 (以前役名)	森菊五郎 (사장)	山村正夫 (전무)	—	—	杉村逸樓 (사장)

(자료) 伏見寬次 「朝鮮信託株式會社」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제4호, 友邦協會朝鮮史料研究會, 1961) ; 中村資良, 앞의 책, 1933·1935年版.

(비고) *의 총매수가격은 자산(권리 및 의무 포함)의 양도가격에 중역수당, 적립금, 퇴직 위로금, 예상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임.

[별표 1] 조선신탁업령 시행(1931.12.1) 전후의 신탁업자 변동

상호	설립	신탁 관련 변동사항	자본금 / 불입	소재지	대표	면허	조선신탁업령 공포 이후
朝鮮勸業信託	1907	1928년 상호변경(前 朝鮮勸業)	25/25	경성	豊田正平		舊名朝鮮勸業으로 상호변경(31.9)
朝鮮土地信託	1919	1928년 신탁업무 개시 1930년 상호변경(前 鮮土地經營)	130.77 / 52.308	경성	荒井初太郎	○	
釜山信託	1920	1921년 상호변경(前 伊藤倉庫) 1922년 상호변경(前 釜山倉庫信託)	100/30	부산	山村正夫	○	
群山信託	1920	1930년 상호변경(前 群山米穀信託)	100/50	군산	森菊五郎	○	
平壤信託	1920		50/12.5	평양	伊藤佐七		平壤興業으로 상호변경(31.11)
大正信託社	1920	1930년 2월부터 부당대부문제로 휴업, 同年 10월부터 재개	10/10	경성	大島善吉		주식회사大正社로 상호변경(31.12)
江景米穀信託	1920		10/3.5	충남	松永定治郎		江景米穀으로 상호변경(31.10)
北鮮信託	1920	1927년 상호변경(前 溇津商事)	10/2.5	청진	橋本益太郎		溇津土地建物로 상호변경(31.11)
鎮南浦信託	1921		4/1	진남포	富田泰三		鎮南浦行之로 상호변경(31.11)
大八信託	1921	1924년 상호변경(前 大八社)	4/4	대구	立木要三		大邱興業으로 상호변경(31.11)
大邱信託	1921		50/15	대구	若林誠助		大邱産業金融으로 상호변경(31.12)
京城穀物信託	1921		100/25	경성	齋藤久太郎		京城倉庫金融으로 상호변경(32.1)
朝鮮信託	1921	1930년 12월 社內불상사로 휴업상태	200/50	인천	池邊竹次		朝鮮金融으로 상호변경(31년말)

釜山米穀證券信託	1922	1931년 말에 南朝鮮信託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100만원으로 減資	300/75	부산	杉村逸樓	○	
木浦信託	1922		5/1.25	목포	奈良次郎		해산
京城興業信託	1922		20/5	경성	李巨世		해산
統營土地	1922		25/2.5	경남	服部源市郎		해산
東亞興業	1922		100/25	경성	尹相武		△
大同商事信託	1922		15/3.75	평양	林弼周		해산
共濟信託	1922		100/25	경성	花園佐吉	○	
威興信託	1923		10/2.5	합흥	信田養一郎		威興土地金融으로 상호변경(31.9)
南昌社	1924		10/2.5	경성	閔衛基		신탁업무 중지
牧島信託	1924		10/4	부산	東松太郎		釜山商事로 상호변경(31.12)
群山商工信託	1925		10/2.5	군산	牛尾正一		해산
大正信託合資	1925		3	부산	中島光之助		해산
元山信託	1926		10/2.5	원산	川澤清太郎		元山興業으로 상호변경(31.11)
大同信託	1926		12/12	평양	桑谷實		大同興業으로 상호변경
朝鮮殖産信託	1926	1928년 9월 10만원으로, 同月 다시 25만원으로 증자(前 2만원)	25/25	경성	李重奭		1933년초 영업 休止整理중
浦項信託	1927		5/1.25	경북	宮嶋定八		浦項土地로 상호변경(31.11)
壬子信託	1927		2/0.5	경남	崔濟國		壬子産業으로 상호변경(31.11)
晉州信託	1927		10/3.5	경남	清水佐太郎		해산

東洋殖産金融	1928	1930년 상호변경(前 東洋殖産信託)	2/0.5	군산	李源衡	△
平壤土地建物	1928		10/2.5	평양	棍道夫	△
全南信託	1929		50/12.5	목포	金尙夔	木浦商會로 상호변경(32.3)
協和信託	1929		10/2.5	함북	山本和太郎	해산
朝鮮不動産信託	1929		45/11.25	부산	寺田哲雄	大成商會로 상호변경(32.4)
合資山宇商會	1929		1.5	경성	漆原松吉	신탁영업 중지
馬山信託	1929		10/2.5	마산	松原早藏	해산
朝鮮興産合資	1930		1.3	경성	太田茂	△
大昌興業	1930		10/2.5	경성	鶴野權	△
大邱商事	1930		10 / 9.8875	대구	伊東楯雄	△
東洋殖産合資	1930		1.1	경성	徐丙宇	해산

(자료) 中村資良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録" (東洋經濟時報社, 1931·1933年版)

- (비고) 1. 1931년 현재 자본금 1만원이 넘는 신탁회사와 경영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2. 상호에 '合資'가 없는 회사는 전부 주식회사임.
 3. 1931년판에는 있으나 1933년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함.
 4. △는 조선신탁업령 시행 이후에도 영업목적에 '신탁업'이 남아 있는 경우이나 실제 신탁영업은 중지되었다고 판단됨.

Establishment of The Choseon Trust Company and Formation of Control System of The Trust Business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MyungSoo Kim*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mean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trust amalgamation, which is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compulsory financial reorganization with bank amalgamation in the late 1920s.

Concretely, after studying the movement of the trust business world before and after Chosen Trust Act in 1931 an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Choseon Trust Company, which had appeared against a backcloth of the trust control polic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adopted, this paper investigated how the trust amalgamation was developed taking Chosen Land Trust Company as an example.

Being suppor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the Bank of Choseon, and Choseon Industrial Bank, Choseon Trust Company, which was started in January 1931, absorbed Kunsan Trust, Pusan Trust, Kongjae Trust, Choseon Land Trust, South Choseon Trust one by one until November 1934, and became a unique trust company. We could say it the centralization of trust business in colonial Choseon. Consequently, the study of Trust Amalgamatio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ill show the character of amalgamation policies in various sectors i.e. the aspect of a formation of state monopoly capitalism, and it will make up for the weakness of Korea financial history that attached important to banks.

KRF Classification: B030106

Key Words: choseon trust company, han sangyong, trust amalgamation, chosen land trust company